

15. 行政權限의 委任 및 委託에 關한 規程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899號 1996. 1.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제10항 제30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제25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종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병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 등의 취득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8.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10.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

12.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

13. 법 제46조 및 영 4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33조 제10항 제10호 라목중 “한국대학

법인협의회” 다음에 “한국대학총장협의회”를 삽입한다.

제34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11호 본문중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전국규모체육대회 또는 국제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을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허가, 전국규모 체육대회 또는 국제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항 동호의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동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재단법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거. 한국프로블링협회

제35조 제11항 제2호 자목중 “결산보고의 승인”을 “결산보고의 수리”로 하고, 동항 동호 모목 및 동항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 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 시설용 무주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

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지관리청의 지정업무 중 농림수산부 장관의 권한

마.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 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등본·초본의 교부 청구

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제36조의 2 제3항 단서중 “제2호·제4호 및 제7호”를 “제2호 및 제7호”로 하고,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 제7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41조 제5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나.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고시

다.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내용의 고시

마.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바.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의 공고

사.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제41조 제6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다음에 “·지방항공청장·수로국장·중앙해난심판원장”을 삽입한다.

제41조 제7항 제26호중 “택지조성사업”을 “택지조성사업과 건축법에 의한 주거시설의 건축”으로 하고, 동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 중 당해 시·도의 관할에 속하는 공유수면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 2 및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및 고시.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며, 시·도지사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등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제8항 본문중 “위탁”을 “위임”으

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인 공유수면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 2 및 제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및 고시.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등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통제소가 관할하는 수계의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1. 하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수위등 관측결과 및 관리상황 통보 접수
2. 하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홍수조절을 위한 지시
3. 풍수해대책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위의 조절에 관한 조치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에의 통보

제42조 제7항 제19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초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증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신고 관련 초지전용에 대한 추천

제44조 제1항 제1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징수금 채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사재보험징수금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지정
라.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7. 관세법 제28조의 7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예방용 감면대상물품의 확인 추천
8.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의 확인

제47조 제6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22.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가. 항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시행 항만공사

나. 항만법 제9조의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공업단지개발사업(공업항의 건설 및 항만시설의 축조시설에 한한다)

제48조 제5항 제13호중 “국제우편환의 종적조사”를 “국제환의 행방조사”로 하고, 동항 제19호·제23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분야 기술자격자에 대한 기술자격취소등 처분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승인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제48조 제6항중 “채신공무원교육원장”을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국제우편환”을 “국제환”으로 하
며, 동항 제7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승인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공업진흥청소관) 공업진흥청장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정기검
사유효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안
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검사를 목적으

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위탁한다.

제53조의 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76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량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위탁한다.

제55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
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의 대부와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권한
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
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사장에게 위탁한
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산청장은 어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의 어항청소선을 사용
하여 실시하는 어항청소에 관한 업무를
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
의 장에게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재개발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그 고시

②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의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변경
2.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보고수리
3.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기간연장 승인
4. 법 제6조 제7항과 이 영 제3조 제

2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5.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규모, 공급조건·방법, 입주자선정의 기준 및 절차등의 승인
6.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기준일의 승인
7.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안주택공사등에 대한 사업시행 요구
8. 법 제9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승인
9.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사업의 변경 기타 조치의 명령

③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3조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준용인가 및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한다.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등 대민관련사무 및 지역적 사무를 지방일선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중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가능한 사무를 민간단체로 위탁하며, 정부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위임된 사무중 개선이 필요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공공차관으로 과학기술처산하 출연연구기관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검토·확인업무를 폐지하는 등 23개 업무를 관계 법령의 개정등에 맞추어 정리함(영 제21조 제3항 등).

나.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등 34개 사무를 지방경찰청장등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위임함(영 제25조 제2항 등).

다.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등 13개 사무를 서울특별시장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35조 제11항등).

라. 승강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등 4개 사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함(영 제53조 등).

〈법제처 제공〉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